

학칙

			제정	1980년	12월	11일			
33차	개정	2003년	02월	28일	1차	개정	1980년	12월	26일
34차	개정	2003년	09월	01일	2차	개정	1982년	10월	08일
35차	개정	2004년	03월	01일	3차	개정	1983년	09월	16일
36차	개정	2004년	03월	15일	4차	개정	1983년	11월	28일
37차	개정	2004년	05월	17일	5차	개정	1984년	02월	07일
38차	개정	2004년	06월	23일	6차	개정	1984년	08월	21일
39차	개정	2004년	12월	27일	7차	개정	1984년	11월	12일
40차	개정	2005년	01월	21일	8차	개정	1985년	10월	31일
41차	개정	2006년	02월	27일	9차	개정	1986년	02월	22일
42차	개정	2006년	04월	01일	10차	개정	1987년	02월	18일
43차	개정	2007년	02월	26일	11차	개정	1988년	02월	04일
44차	개정	2007년	07월	11일	12차	개정	1988년	12월	31일
45차	개정	2007년	12월	28일	13차	개정	1989년	04월	19일
46차	개정	2009년	03월	01일	14차	개정	1989년	04월	29일
47차	개정	2010년	01월	20일	15차	개정	1989년	12월	04일
48차	개정	2010년	05월	28일	16차	개정	1990년	05월	03일
49차	개정	2011년	02월	25일	17차	개정	1990년	11월	13일
50차	개정	2012년	03월	01일	18차	개정	1991년	12월	20일
51차	개정	2013년	03월	01일	19차	개정	1992년	10월	06일
52차	개정	2014년	03월	01일	20차	개정	1993년	01월	25일
53차	개정	2014년	08월	29일	21차	개정	1993년	08월	07일
54차	개정	2015년	02월	23일	22차	개정	1993년	10월	12일
55차	개정	2015년	06월	10일	23차	개정	1994년	02월	22일
56차	개정	2016년	02월	24일	24차	개정	1994년	08월	29일
57차	개정	2017년	02월	27일	25차	개정	1994년	09월	13일
58차	개정	2017년	08월	28일	26차	개정	1995년	02월	15일
59차	개정	2017년	09월	19일	27차	개정	1996년	03월	04일
60차	개정	2018년	02월	27일	28차	개정	1997년	02월	28일
61차	개정	2018년	04월	20일	29차	개정	1997년	12월	10일
62차	개정	2019년	02월	26일	30차	개정	1998년	02월	25일
63차	개정	2019년	11월	19일	31차	개정	1999년	09월	01일
64차	개정	2020년	07월	27일	32차	개정	2002년	03월	01일
65차	개정	2021년	04월	05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대학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국가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대학교는 “대덕대학교”라 한다.

제3조(위치) 본 대학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68 (장동 48번지)에 둔다.

제4조(설치학부(과,전공) 및 입학정원) ①대학에 두는 학부(과,전공)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별도 입학하는 학생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구 분		입학정원
학 과 명	수업년한	주간
기계설계과	2	40
자동차학과	2	70
전기과	2	70
전기전자과	2	40
반도체자동화과	3	35
정밀기계공학과	3	35
컴퓨터공학과	2	60
컴퓨터정보학과	2	40
공병부사관과	2	40
국방물자과	2	40
국방탄약과	2	40
방공정보통신부사관과	2	40
전투부사관과	2	40
총포광학과	2	40
특전부사관과	2	60
국방해양부사관과	2	40
항공부사관과	2	60
경찰행정학과	2	40
마케팅서비스과	2	35
세무공무원과	2	35
사회복지과	2	60
아동보육상담학과	2	35
유아교육과	3	44
호텔레저컨벤션과	2	35
레저산업학과	2	40
보건의료행정과	2	40
호텔외식조리과	2	60
모델과	2	40
뷰티과	2	60
생활체육과	2	60
시각디자인과	2	40
영상연기콘텐츠과	2	35
인테리어디자인과	2	35
패션디자인과	2	35
샵마스터쇼핑과	2	40
합계		1,559

<개정 2013.03.01., 2014.03.01., 2015.02.23., 2017.02.27., 2017.08.28., 2018.04.20., 2020.07.27.>

구 분		입학정원
학 과 명	수업년한	주간
자동차학과	2	70
전기공학과	2	70
정밀기계공학과	3	40
컴퓨터공학과	2	40
전투공병부사관과	2	40
국방물자과	2	40
국방탄약과	2	40
방공무기부사관과	2	40
전투부사관과	2	40
총포광학과	2	40
특전부사관과	2	60
국방해양부사관과	2	40
항공부사관과	2	60
군사경찰부사관과	2	40
경찰행정학과	2	40
마케팅·세무회계과	2	40
사회복지과	2	60
유아교육과	3	44
보건의료행정과	2	40
호텔외식조리과	2	60
반려동물과	2	40
모델과	2	40
뷰티과	2	60
생활체육과	2	60
시각디자인과	2	40
웹툰학과	2	40
합계		1,224

<개정 2021.04.05.> <시행일 2022.03.01.>

②학부(과)별 전공 및 코스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의 2 (학부(과,전공)의 통합 및 폐지 등) 본 대학교에 설치된 학부(과, 전공)의 통합, 변경 폐지 등은 학과구조조정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3.03.01., 2014.08.29.>

제2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5조(수업연한) ①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단, 고등교육법 제48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7조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학부(과)는 3년으로 한다.

②고등교육법 제40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2에 의한 산업체위탁교육은 해당 모집단위의 수업연한과 동일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9>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 본 대학의 수업연한을

4분의 1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수업 연한 단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전공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제의 전문학사 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는 2년 이상, 3년제의 전문학사 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는 1년 이상으로 한다.

⑤학부(과)의 수업연한이 3년제에서 2년제로 전환된 학부(과)에서 3년제로 입학한 학생이 휴학 후 복학 시 2년제로 수업연한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05.28.>

제6조(재학연한) 재학연한은 본 대학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수 연한으로 한다.

제3장 학년, 학기의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7조(학년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주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학기) ①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정한다.

제1학기 : 3월 초순 ~ 8월 말까지

제2학기 : 9월 초순 ~ 익년도 2월말까지

다만, 개강은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기 개시일 전·후에 개강할 수 있다.

<개정 2011.02.25., 2018.02.27., 2020.07.27>

②제1항에 따른 학기는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 학년, 학위과정별로 달리 운영할 수 있고,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계절학기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02.27., 개정 2020.07.27., 2021.04.05>

③<삭제 2020.07.27.>

④전공심화과정의 학기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수업일수) ①수업일수는 학교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

<개정 2011.02.25., 2018.02.27.>

②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 <신설 2018.02.27.>

③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 또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매 학년도 30주 중 2주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11.02.25., 2018.02.27.>

④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24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한다. <신설 2018.02.27.>

제10조(휴업일) ①수업일은 교과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하며,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야간 및 산업체위탁교육생의 방학기간은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하계방학 : 6월 하순 ~ 8월 하순사이 <개정 2011.02.25.>

 동계방학 : 12월 하순 ~ 익년도 2월 하순까지

2. 삭 제 <2010.05.28.>

3. 일요일

4. 국정공휴일

5. 개교기념일 <신설 2019.11.19>

6. 근로자의 날 <신설 2019.11.19>

②휴업 기간의 변경 및 임시 휴업은 필요에 의하여 총장이 정한다.

③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시험·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

④총장은 비상재해 등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업할 수 있다.

<개정 2017.09.19.>

제4장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

제11조(입학시기) 입학, 재입학, 편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 개시일 부터 수업일 수 1/4선 이내로 한다.

제12조(입학자격) ①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경력이 있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동일계열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전문대학 또는 학력인정과정 입학 후 관련분야 근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자로 한다. 단, 전문대학을 전년도에 졸업한 자는 산업체 근무경력이 9개월 이상인 자로 한다. <개정 2014.08.29.>

③경력이 없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동일계열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신설 2014.08.29.>

제13조(입학지원 절차)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원서에 총장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첨부 하여 전형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입학전형) ①입학전형은 매학년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 계획의 범위 안에서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개정 2015.02.23.>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6. 삭 제
- ② 삭 제

제14조의 2(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①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02.23.>

②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02.23.>

제14조의 3(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입학전형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계획,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02.23.>

②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입학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모집단위별 학부(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에 따른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03.01., 2015.02.23.>

③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고도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수학이 불가능한 학생이 발생되었을 경우 장애인심사위원회를 겸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5.02.23., 2019.02.26.>

제14조의 4(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 ①전공심화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관리하기 위하여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산업체 인사가 50%이상 참여해야 한다.

③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의 5 (대학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①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06.10.]

제15조(입학허가) 입학허가는 총장이 결정한다.<개정 2013.03.01.>

제15조의 2(이중 학적금지) 본 대학 학생으로서 이중 학적을 가질 수 없다.

제16조(편입학) ①대학의 1학년 과정 이상을 이수한 자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는 매학기 초에 편입학할 수 있다.

②편입학은 각 학부(과)별로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한다.

③편입생은 편입할 당해 학부(과)의 학년제와 교과과정을 적용받는다.

④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편입학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6조의 2(학부(과) 및 전공변경) ①학부(과)의 변경(이하 “전과”라 한다)은 1학년 2학기 초에 허가할 수 있으며,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한다. 단, 3년제의 경우 1학년 2학기 초 또는 2학년 1학기 초에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2.03.01.>

②전공변경은 각 학부(과)별로 정한 규칙에 의해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전과는 전입 학부(과)의 입학정원 30%의 범위 내에서 전체계열로 허가한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09.19.>

1. 학군 제휴에 의한 군사 관련 학과로의 전과는 입학정원 대비 결원의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2. 유아교육과로의 전과는 불허한다.

3. 학부(과) 폐지로 인한 전과는 인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17.09.19.>

④학부(과) 및 전공을 변경한 자는 변경후의 학부(과)나 전공의 소정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미 취득한 학점은 총장이 인정할 수 있다.

⑤산업체위탁교육으로 입학한 자는 타 학부(과)에 전과할 수 없다. 다만 동일 학부 내에서의 전공변경은 허가할 수 있다.

⑥산업체위탁교육생이 휴학 후 복학 시 학부(전공)또는 과(전공)가 개설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교과과정이 유사한 과(전공)로 변경하여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⑦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은 학부(과) 및 전공의 변경을 허가할 수 없다.

⑧2년제 학부(과)에서 3년제 학부(과)로 전과를 허가할 수 있다. 전과의 시기, 범위, 방법 등은 1항에서 7항에 의한다. 다만, 3년제 학부(과)에서 2년제로의 전과는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0.05.28.>

제16조의 3(주·야간의 모집단위 이동) ①주·야간 교육과정이 동일한 학부(과)에 대해서는 각 학년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과 재적생 대비 결원이 발생할 경우 주·야간 모집단위 이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주·야간 모집단위 이동은 2학년 1학기 초에 허가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은 주·야간 모집단위별 이동을 허가할 수 없다.

제17조(재입학) ①제적된 자는 학기 초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② 삭제

③재입학은 당해 학년도 전체 제적 및 자퇴 학생 수 만큼 인정하며 제적된 학부(과)의 모집단위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④재입학은 재입학 당시의 학년제와 교과과정을 적용받는다.

⑤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동일 계열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있다.

⑥산업체위탁교육생은 입학당시의 업체에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하고, 입학당시의 학부(과)가 현재 개설되어 있으면 산업체장의 동의를 받아 재입학할 수 있다. 다만, 학부(과)의 명칭변경, 통폐합에 의한 학부(과)변경은 현재 개설된 것으로 본다.

제18조(등록) ①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서식에 의거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는 자
2. 이중 학적을 가진 자
3. 입학 모집요강에서 정한 입학취소 요건에 해당되는 자

제5장 휴학, 퇴학 및 제적

제19조(휴학) ①질병, 병역의무, 부모학생의 만8세 이하의 자녀 양육과 여학생의 임신 출산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 1/4선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보호자 연서(산업체위탁교육생은 제외)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산업체위탁교육생은 산업체장의 동의서와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개정 2017.02.27., 2021.04.05>

②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진료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제출하고, 부모학생의 만8세 이하의 자녀 양육으로 인한 휴학은 가족관계증명서, 임신 출산으로 인한 휴학은 임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27.>

③휴학은 1년 단위로 연속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학부(과)에서 판단하여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으면 학부(과)장의 동의를 받아 학기 단위로 휴학할 수 있다. <개정 2010.05.28.>

④ 삭제 <2019.02.26.>

제19조의 2(복학) ①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에 복학한다.

②복학은 매학기 수업일수 1/4선까지 허가할 수 있다.

③일반휴학자 중 군 휴학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대하여 제적된 자가 전역 후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병적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제적을 군 휴학으로 소급 적용하여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④휴학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1. 삭 제

2. 휴학자가 학점 재이수 등의 사유로 조기 복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학기가 개시되어 수업일수 1/4선이 지난 후 전역예정인 경우 소속부대장의 휴(허)가 또는 수업허가 등으로 사실상 수업일수 1/4선 이전부터 출석이 가능하여 학점 취득을 위한 최소 출석일수를 확보할 수 있고 총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4. 공익근무 또는 군복무 등으로 휴학 중인 자가 복학을 희망하는 경우 복무를 관리하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가 있고 수강에 지장이 없을 경우

제20조(자퇴) ①본인의 질병, 사망, 실종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 퇴학(이하 “자퇴”라 한다)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생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2.27.>

②자퇴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제21조(제적) ①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제적시킬 수 있다. <개정 2018.02.27.>

1. 휴학기간 종료 후 4주(28일)가 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2.03.01., 2021.04.05>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2010.05.28.>

5. 타교에 입학한 자

6.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매학기 소정 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8. (미수강신청)수업일수 1/4선까지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 <신설 2018.02.27., 개정 2020.07.27.>

②제적된 학생은 학적을 상실한다.

제6장 교과 및 수업

제22조(교육과정) ①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공교과로 구분하며, 학점배점은 졸업이 수학적 기준을 기준으로 2년제는 교양교과(직업기초 포함) 10학점 이상, 전공교과 53학점 이상, 3년제는 교양교과(직업기초 포함) 14학점 이상, 전공교과 81학점 이상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3.03.01., 2019.02.26., 2020.07.27.>

②교양교과와 전공교과는 각각 필수와 선택으로 나누며, 본 대학 교과과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07.27.>

③현장실습 의무대상 학부(과)의 현장실습 교과는 전공교과의 필수로 한다.

<개정 2020.07.27.>

④ 삭 제

⑤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의 교과과정은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⑥e-MU과정의 교육과정은 e-MU과정 운영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2019.02.26.>

제22조의 2(교육과정의 연계운영) 총장은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계 고교, 대학, 산업대학 및 산업체와 상호 연계하여 교과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의 3(e-Military University과정의 운영) ①국방부와 협약한 전문계고와 전문병을 거쳐 전문하사로 복무 중인 자가 전문학사 학위취득을 위한 e-Military University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e-Military University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02.25.]

제23조(비정규 특별과정 운영) ①대학에는 1년 이내의 특별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비정규 특별과정은 본 대학에 설치된 학부(과)와 유사한 분야에 한하여 설치한다.

③비정규 특별과정의 설치과정 등록인원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23조의 2(시간제 등록제) ①본 대학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제 등록생을 모집할 수 있다.

②모집인원은 당해 학년 총 입학정원의 범위 이내로 한다.

③시간제 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정규학생이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1/2 범위 이내로 한다.

④시간제 등록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총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고 신청 학점에 따라 산정된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시간제 등록생의 선발방법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의 3(학점은행제 운영) ①대학에서는 평생학습 체제 실현을 위해 다양한 학습 활동을 통해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는 학점은행제 시행에 따른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학점은행제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의 4(전공심화과정 운영) ①대학에서는 고등교육법 제49조에 의하여 전공심화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전공심화과정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의 5(부전공) ①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적용받은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전공교과 중 2년제 18학점 이상, 3년제 28학점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26., 2020.07.27.>

②부전공 교과목의 학점은 각각의 전공 학점으로 인정하며, 중복하여 인정하지는 아니한다.

③부전공이수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의 6(외국대학과의 교과과정 운영) ①외국교류기관과의 학문적 교류를 증진시키고 학생들의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외국대학과 교환 및 파견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 기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 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의 7(해외인턴십 학점인정) ①글로벌 시대의 산업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국제 감각과 능력을 겸비한 산업인력 배출을 위한 해외인턴십을 학기 중에 운영할 수 있다.

②학기 중에 해외인턴십을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의 8(코스제 교육과정 운영) ①학생이 원하는 코스를 이수하면서 관심 있는 다양한 과목을 이수 가능하도록 운영할 수 있는 코스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코스제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의 9(공학기술교육인증 학위과정 운영) ① 삭 제 <2017.09.19.>

② 삭 제 <2017.09.19.>

③ 삭 제 <2011.02.25.>

④ 삭 제 <2017.09.19.>

제24조(교과이수 단위) ① 교과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매 학기 학점당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02.27.>

② 2년제 학부(과)의 졸업이수학점은 75학점 이상으로, 3년제 학부(과)의 졸업이수학점은 113학점 이상으로 하고, 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은 130학점 이상(전문학사 학위 과정 취득학점을 포함하여 1년제는 20학점 이상, 2년제는 6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교양 교과와 전공교과의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 <개정 2019.02.26.>

③ 학생은 매학기 최소 15학점(전공심화과정은 8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4학점을 초과 이수하지 못한다. 다만, 졸업유보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5학점(전공심화과정은 8학점) 미만을 수강신청 할 수 있다.

④ 계절학기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 제22조 제3항에 의한 현장실습 학점은 1학점 이상으로 하되 현장실습의 방법, 기간 및 학점 기준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⑥ 삭 제

⑦ 학생의 출석 등 제1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02.27.>

제25조(수업)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가상(원격)수업, 자율학습 및 산업체 현장 실습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교과목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총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양, 교직 및 전공과목에 대하여 학년, 학부(과)를 달리 하는 학생에 대해 통합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한 수업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계절 수업은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하계 또는 동계 방학 기간 중에 계절학기로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 가상(원격)수업은 학기별 각 전공(학과)의 총 개설학점 이내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02.26. 개정 2021.04.05.>

⑥ 감염병 등에 따른 위기단계 발생시 수업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0.07.27.>

제25조의 2(실습학기) ① 본 대학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실습 학기를 운영할 수 있다.

1. 2년제로 운영하는 학부(과)는 2학년 2학기 실습학기를 개설 운영할 수 있다.

2. 3년제로 운영하는 학부(과)는 3학년 2학기를 실습학기로 운영할 수 있다.

②실습학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의 3(집중이수제) ①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집중이수제는 학기 중 현장실습, 계절수업에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학부(과)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4.05>

제25조의 4(교원책임시간) ①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주당 9시간 이상으로 하되 운영에 따라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보직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강사 등의 책임시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03.01.>

제25조의 5(미출석 취업자 출석인정) ①졸업예정자 중 취업이 정해져 산업체에서 재직 중인 자의 취업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미출석 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02.27.]

제25조의 6(타교생의 수학) 국내·외의 대학에서 재학중인 학생이 본교에서 수학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수학기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 등에 의한다.

[본조신설 2017.02.27.]

제25조의 7(융합전공 운영) 재학생에게 다양한 전공체험 및 진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융합전공을 운영하여 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07.27.]

제7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26조(평가시험) ①성적평가는 주관식 또는 객관식 시험을 병용할 수 있으며, 그 실시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학부(과)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졸업에 소요하는 시험을 과할 수 있다.

③각 교과목 총 수업 시간수의 4분의 1이상을 결석한 자는 당해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에 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학부(과)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27조(성적) ①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 학습태도, 과제와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와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교과의 성적평가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각 교과목의 강좌별 급제는 D급 이상으로 하되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교과목에 있어서는 P를 급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04.05>

등 급	배 점	평 점
A+	100~95	4.5
A	94~90	4.0
B+	89~85	3.5
B	84~80	3.0
C+	79~75	2.5
C	74~70	2.0
D+	69~65	1.5
D	64~60	1.0
F	59이하	0.0
P		불계

③삭 제

④삭 제 <2019.02.26.>

⑤성적배점 및 분포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⑥삭 제 <2019.02.26.>

⑦삭 제 <2019.02.26.>

⑧삭 제 <2019.02.26.>

⑨삭 제 <2019.02.26.>

⑩삭 제 <2019.02.26.>

제27조의 2(학기포기) 조기복학자에 한하여 본인이 취득한 학기를 포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4.08.29.>

제27조의 3(재수강) 재학생은 본인의 원에 의하여 기 취득한 학점을 재수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08.29.]

제27조의 4(학점인정) ①전문대학 또는 대학이수자가 신입생으로 입학하였을 경우, 전적 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본 대학에서 개설한 교양 교과목과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에는 졸업학점의 10%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②편입자가 전적 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본 대학의 편입 전공 교과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본 대학의 추천으로 국내·외 대학에서 이수한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④본 대학 입학 전 또는 본 대학 재적생 중 대학 수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그 교과목을 본 대학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병역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중인 자가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경우 학기당 3학점 이내, 연 6학점 이내에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⑥군복무기관에서 인정하는 군복무 기간의 다양한 교육적 현장 경험을 대학에서 정하는 별도 절차를 거쳐 최대 4학점 이내에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0.07.27.>

⑦학점인정의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9.02.26.]

제28조(진급인원) 2학년, 3학년에 진급할 수 있는 인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성적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성적
2. 매학기 24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성적
3. 중복 신청하여 취득한 성적
4. 출석미달 교과목의 성적

제30조(경고) 성적평가 결과 성적이 불량하고, 학년승급 또는 졸업에 탈락이 예상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학위수여 취소 및 수료) ①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제22조 1항,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 중 전문학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 I 에 해당하는 학위를 수여하고, 전공심화과정에 대학 학위수여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 2에 의거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4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 II에 해당하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2.26.>

1. 1학년 수료 : 38학점 이상
2. 2학년 수료 : 75학점 이상
3. 3학년 수료 : 113학점 이상
4. 4학년 수료 : 130학점 이상

③학점 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후 후기 졸업을 할 수 있다.

- ④1997년 이전 졸업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 1에 해당하는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⑤제23조의 2에 의한 학습과정을 이수하고 학위 수여 조건에 충족된 자에게는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장이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과)별 전문학사 학위는 동 규정 제31조 제1항에 의한다.
- ⑥2년제 학부(과)로 입학하여 휴학한 후, 복학할 경우 3년제 학부(과)로 수업연한이 연장된 학부(과)은 2년제 학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 ⑦3년제 학부(과)로 입학하여 휴학한 후, 수업연한이 2년제로 변경된 경우에는 3년제의 수업연한으로 학위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⑧코스별로 운영하는 학부(과)에서 학생이 신청한 코스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해 코스 전공 교과목 학점의 60%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⑨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제22조 1항, 제23조의 9의 규정에 따라 공학기술교육 인증 학위과정별 졸업요건이 충족된 자는 별지 5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 3에 해당하는 학위를 수여한다.<신설 2014.08.29.>
- ⑩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02.23., 2019.02.26.>

제31조의 2(조기졸업) ①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는 조기졸업할 수 있다.

②조기졸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의 3(졸업자격 인증) ①졸업 자격 인증 제도를 실시하는 학부(과)의 졸업예정자는 졸업 자격인증 평가에 합격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②졸업자격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장 학생활동

제32조(학생회 조직) ①학생자치 활동을 신장시키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대학에 학생회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본 대학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제적, 퇴학 또는 졸업과 동시에 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③학생회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

제33조(회비) 학생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4조(학생단체의 조직 승인)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학생활동 금지)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집단적 행위, 시위, 성토, 농성, 등교거부와 수업거부, 마이크 사용, 불온게시물의 무단 부착 및 배포 등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하여 간섭할 수 없다.

제36조(학생지도) ①총장은 매 학년 초 학생지도계획을 세워 운영하여야 한다. 가디언 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 위반자에 대하여는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상담 요청이 있을시 개별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19.>

②학생회를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1.02.25.>

제37조(학생활동의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참가 예정 인원 등에 대하여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의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의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요청 또는 시상 의뢰
4. 외부인사의 학내초청
5. 서명운동, 찬반투표 및 실태조사

제38조(간행물 발행)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지도위원)가 지도·추천한 후 학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한다.<개정 2011.02.25.>

제39조(처벌) ①본 장의 제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총장이 직접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11.02.25.>

②제1항에 의하여 징계 제적된 자(타교에서 제1항에 의하여 제적된 학생 포함)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할 수 없다.

제9장 규율과 상벌

제40조(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 성의껏 학업에 종사하며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써 장차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닦아야 한다.

제41조(결석)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게 될 때에는 지체 없이 총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결석이 7일을 초과할 때에는 진료기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2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자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만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43조(징계) ①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1.02.25.>

1. 학칙을 위반한 자
2. 사 제
3.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선의 가망이 없는 자
4.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케 한 자
5. 학교 및 교직원의 명예를 손상케 하는 행위를 한 자
6.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②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

제43조의 2(성희롱·성폭력 예방)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본 대학의 구성원을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조직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02.26.>

제10장 납입금

제44조(납입금) ①학생은 매학기 등록 시기에 소정액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납입금은 수업료, 입학금, 실험 또는 실습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비용 및 그 밖의 납입금 등으로 한다.

②실험 또는 실습비, 기성회비, 기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은 납입금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③납부한 납입금의 반환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준한다.

④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 납입금의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4.08.29.>

⑤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의거 학점당 등록제로 등록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계절수업 등록자, 유급자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4.08.29.>

⑥학점당 등록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5조(납입금의 면제)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및 국가유공자

녀에 대하여 납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장 장학금

제46조(장학금) ①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
3. 기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자

②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휴학, 퇴학, 제적 또는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③장학금의 종류, 장학생의 선정, 지급액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단, 학교기업에 직접 참여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제12장 교수회 및 각종위원회

제47조(교수회) ①대학에 교수회를 두며,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②교수회 회장은 전체 교수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9.02.26.>

③교수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은 그 의장이 되며, 총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신설 2019.02.26.>

④교수회는 총장의 요구에 의하여 대학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9.11.19>

1. 교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3. 장학 및 후생에 관한 사항
4. 학부(과) 및 전공간의 조정을 요하는 사항
5.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교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11.19>

제47조의 2(학장단회) 사 제

제47조의 3(교무위원회) ①본 대학 교무 전반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교무처장, 입학처장, 학생처장, 취업산학처장, 기획처

장, 행정처장, 산학협력단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약간 명의 교무위원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4.03.01., 2017.02.27., 2020.07.27.>

③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사운영의 기본계획 수립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칙 및 제 규정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3. 주요 사업계획 및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4. 교직원의 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5.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6. 대학의 중요일정에 관한 사항
7. 주요 기구조직, 학부(과) 및 전공, 부속(설)기관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8. 삭 제 <2010.05.28.>
9. 각 부서에서 중요 정책사항으로 부의하는 사항
10.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⑤교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8조(학사운영위원회) ①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위원의 구성은 교무처장, 학부(과)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약간 명의 교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3.03.01., 2014.03.01.>

③학사운영위원회는 교무처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교무처장 부재 시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3.01., 2014.03.01.>

④학사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02.26.>

1. 삭제
2. 진급, 졸업에 관한 사항
3. 성적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4. 학사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5. 교수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
6. 기타 총장이 부의 하는 사항

⑤제4항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학부(과)장을 위원으로 하여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9.02.26.>

⑥학사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02.26.>

제48조의 2(각종 위원회) ①총장의 자문과 부서별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8조의 3(교원양성위원회) ①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8조의 4(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①대학의 장애학생들에 대한 지원계획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를 둔다.

②이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02.25.]

제48조의 5(등록금심의위원회) ①고등교육법 제11조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거 등록금채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삭 제

④삭 제

⑤삭 제

⑥삭 제

⑦삭 제

제48조의 6(도서관운영위원회) ①대학도서관진흥법 제10조에 의거 대학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

②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02.24.]

제13장 직제

제49조(교직원) ①본 대학의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로 구분하며 학부(과)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03.01., 2017.02.27., 2019.02.26.>

[시행일(강사) : 2019.8.1.]

②총장은 대학 운영에 필요한 직원과 조교를 각각 임용 또는 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10.05.28.>

③총장은 제1항의 교원 외에 전임대우교원, 초빙교원, 산학협력중점교수, 겸임교원, 명예교수, 석좌교수, 특임교수, 외국인명예교수 등을 각각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3.03.01., 2017.02.27., 2017.09.19., 2019.02.26. 2019.11.19>

[시행일(강사) : 2019.8.1.]

④ 제3항의 교원 등의 임용 및 평가, 심사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03.01., 2017.09.19. 2019.11.19>

제49조의 2(교직원의 임무) ①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개정 2013.03.01., 2019.02.26.>

③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업무를 담당한다.

④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제49조의 3(교직원의 인사 및 복무) 본 대학 교직원의 인사 및 복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05.28.] <조명개정 2020.07.27.>

제50조(직제) ① 본 대학에는 기본기관으로 총장, 교육부총장, 행정부총장, 대외부총장,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를 두고 행정기관으로는 교무처, 입학처, 학생처, 기획처, 취업산학처, 행정처를 두며 총장 직속기관으로 산학협력단, 윤리위원회를 둔다. 교육부총장은 교무처, 입학처, 학생처, 기획처, 취업산학처, 예비군대대를 행정부총장은 행정처를 대외부총장은 부속기관을 관할한다. <개정 2013.03.01., 2014.03.01., 2016.02.24., 2017.02.27., 2019.11.19., 2020.07.27., 2021.04.05>

② 각 처에 처장을 보하고 처장은 총장, 부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부서내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14.03.01.>

③ 각 처에는 하부조직을 둘 수 있으며 업무분장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02.27., 2019.02.26.>

④ 삭 제

⑤ 학칙 상의 학부(과)이외에 교양과를 설치할 수 있다.

⑥ 삭 제

제50조의 2(산학협력단) ① 본 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학협력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1.19.>

②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두며, 총장이 임명한다.

③ 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중점교수를 둘 수 있다.<개정 2013.03.01.>

④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0조의 3(학교기업의 설치)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

36조에 의한 학교 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1.19.>

②삭 제 <2017.08.28.>

③삭 제 <2017.08.28.>

④삭 제 <2017.08.28.>

제50조의 4(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기준) ①학교기업 운영 성과 결산 결과 순이익 발생 시 순이익의 60% 범위 내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교직원 1인당 연간 지급 보상금은 순이익의 20%를 넘을 수 없다.

③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등록금 총액을 넘을 수 없다.

④제2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⑤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0조의 5(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삭 제 <2017.08.28.>

제50조의 6(장애학생지원센터) ①대학의 장애학생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둔다.

②조직의 센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02.25.]

제50조의 7(NCS지원센터) ①삭제<신설 2014.08.29. 삭제 2019.11.19.>

②삭제 <2019.11.19.>

[본조신설 2014.08.29.]

제14장 부속시설

제51조(부속기관) ①대학에는 다음 각 호의 부속기관을 둔다.<개정 2012.03.01., 2016.02.24., 2017.02.27., 2021.04.05>

1. 평생교육원

2. 삭 제

3. 삭 제 <2013.03.01.>

4. 삭 제 <2016.02.24.>

5. 삭 제 <2013.03.01.>

6. 도서관

7. 삭 제
8. 삭 제
9. 삭 제
10. 삭 제
11. 어린이집
12. 삭 제 <2017.02.27.>
13. 삭 제 <신설 2016.02.24. 삭제 2019.11.19.>
- 14.<신설 2017.02.27., 삭제 2020.07.27..>
15. 대덕군사기술연구소 <신설 2017.08.28.>
16. 영유아보육연수원<신설 2020.07.27.>
17. 대학발전연구원 <신설 2020.07.27.>
18. 대학역사관 <신설 2021.04.05>

②삭 제

- ③대학에는 필요에 따라 기타의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 ④부속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⑤도서관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6조,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도서관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6.02.24.>
 1.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대학도서관의 예산, 조직, 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 등
 3.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과 교육훈련 시간
 4. 시설 및 도서관 자료

제15장 학칙 제·개정 절차

제51조의 2(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학칙의 제·개정을 할 경우에는 제·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1조의 3(공고기간) 학칙 제·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상으로 한다.

제51조의 4(의견제출 및 처리) ①본 대학의 교직원은 공고된 학칙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당해 학칙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된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의 5(심의·의결·공포) ①사전 예고 절차를 거친 학칙 제·개정안은 대학평의원회 심의, 교무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학칙의 공포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교무위원회 심의·의결을 마친 후 총장이 시행한다. <개정 2014.08.29.>

제16장 보 칙

제52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3조(산업체 위탁교육) ①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서 현재 재직 중인 산업체로부터 교육을 일괄하여 위탁받은 때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과 입학, 교육과정의 편성,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 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교육비 및 등록, 위탁생의 신분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산업체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산업체위탁교육생이 재입학을 하고자 하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54조(자체평가) 고등교육법에 의거 대학의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82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83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83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86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87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졸업자격고사 합격자 처리) 1981학년도 이후 198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자 중 전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예정자로서 졸업정원에서 제외된 자가 전문대학 졸업자격고사에 합격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졸업정원 감축학과의 졸업정원 적용에 관한 특례) 졸업정원 감축학과의 졸업 정원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다.

학과	졸업정원	적용학년도		비고
		부터	까지	
무역과	120	1986	1988	
세무회계과	120	1986	1988	
행정과	120	1986	1989	
경영과	200	1986	1987	
	120	1986	1990	
유아교육과	120	1987	1990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졸업정원을 입학정원으로 전환함에 따른 경과조치) 1981학년도부터 1987학년도 사이

에 입학한 자 중 1988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 제16조, 제16조의 2, 제27조, 제28조, 제31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학생소속변경) 학과가 신설, 통합 또는 개편된 경우에는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8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자는 신설 통합 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89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과의 개편에 따른 학생소속 변경) 1989학년도 입학한 학생 중 소속 학과의 학생은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한다.

③(학과의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93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9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제22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시행세칙)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기타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1995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학칙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1997년도 이전에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1에 해당하는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98학년도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 명칭변경, 통합학과 소속을 원칙으로 하되, 폐지 등의 경우는 교과과정 유사한 학과의 소속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충남전문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대덕대학의 재적생으로 본다.

2.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 조치)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 명칭변경, 통합 계열, 학과 소속을 원칙으로 하되 폐지 등의 경우는 교육과정이 유사한 계열,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열(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 조치) 종전의 계열 명칭이 변경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2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 명칭변경, 통합계열(과) 소속을 원칙으로 하되 폐지 등의 경우는 교육과정이 유사한 계열(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학칙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2003학년도 학위취득예정자는 이 개정 학칙과 관계없이 종전의 학칙을 준용한다.

③(계열(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계열 명칭이 변경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3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 명칭변경, 통합계열(과) 소속을 원칙으로 하되 계열(과)나 전공명칭 변경 등의 경우는 교과과정이 유사한 계열(과)의 소속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열(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계열 명칭이 변경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 명칭 변경 통합 계열(과)의 소속을 원칙으로 하되 계열(과)과 전공 명칭 변경 등의 경우는 교과과정이 유사한 계열(과)의 소속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계열(과) 명칭이 변경된 사유로 인하여 2년제는 2006학년도, 3년제는 2007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까지 졸업을 하지 못한 자는 개편, 명칭 변경, 통합 등의 계열(과) 소속을 원칙으로 하되 계열(과)과 전공 명칭 변경 등의 경우는 교과과정이 유사한 계열(과)의 소속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계열(과) 명칭이 변경된 사유로 인하여 2년제는 2007학년도, 3년제는 2008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까지 졸업을 하지 못한 자는 개편, 명칭변경, 통합 등의 계열(과) 소속을 원칙으로 하되, 계열(과)가 폐지된 경우에는 교육과정이 유사한 계열(과)의 소속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7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계열(과) 명칭이 변경된 사유로 인하여 2년제는 2008학년도, 3년제는 2009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까지 졸업을 하지 못한 자는 개편, 명칭변경, 통합 등의 계열(과) 소속을 원칙으로 하되, 계열(과)가 폐지된 경우에는 교육과정이 유사한 계열(과)의 소속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7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학부(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 조치) 종전의 학부(과) 명칭이 변경된 사유로 인하여 2년제는 2009학년도, 3년제는 2010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 명칭 변경, 통합 등의 학부(과) 소속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과)가 폐지된 경우에는 교과과정이 유사한 학부(과)의 소속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부(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 조치) 종전의 학부(과) 명칭이 변경된 사유로 인하여 2년제는 2010학년도, 3년제는 2011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 명칭 변경, 통합 등의 학부(과) 소속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과)가 폐지된 경우에는 교육과정이 유사한 학부(과)의 소속으로 한다.

③(학기제 개편에 따른 경과 조치) 1. 2009학년도 2,3학년, 2010학년도 3학년은 제3장, 제6장, 기타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칙에 대하여는 이 개정 학칙과 관계없이 종전의 학칙을 준용한다.

2. 1학년3학기, 2학년3학기에 휴학한 학생은 한시적으로 2학기제 1학년2학기, 2학년2학기로 복학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3학기제로 입학한 학생이 휴학 후 복학시 등록금 징수, 교양, 전문교과의 졸업소요학점에 대하여는 이 개정 학칙과 관계없이 종전의 학칙을 준수한다.

4. 3학기제로 입학한 학생이 복학 후 한시적으로 계절수업을 활용해 졸업소요학점을 취득할 경우 졸업을 할 수 있으며, 계절수업 개설 기간, 학점은 학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절수업 강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수강신청인원이 15명이상이 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0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학부(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 조치) 종전의 학부(과) 명칭이 변경된 사유로 인하여 2년제는 2010학년도, 3년제는 2011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 명칭변경, 통합등의 학부(과) 소속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과)가 폐지된 경우에는 교육과정이 유사한 학부(과)의 소속으로 한다.

③(학기제 개편에 따른 경과 조치)

1. 2009학년도 2,3학년, 2010학년도 3학년은 제3장, 제6장,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칙에 대하여는 이 개정 학칙과 관계없이 종전의 학칙을 준용한다.

2. 1학년 3학기(2학년 3학기)에 복학해야 하는 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황을 고려하여 1학년 2학기(2학년 2학기)에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학과에서 판단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이상이 없으면 2학년 1학기(3학년 1학기)에도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3. 3학기제로 입학한 학생이 휴학 후 복학시 등록금 징수, 교양, 전문교과의 졸업소요학점에 대하여는 이 개정 학칙과 관계없이 종전의 학칙을 준수한다.

4. 3학기제로 입학한 학생이 복학 후 한시적으로 계절수업을 활용해 졸업소요학점을 취득 경우 졸업을 할 수 있으며, 계절수업 개설 기간, 학점은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절수업 강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수강신청인원이 15명이상이 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0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3학기제 입학생 등록금 수납 경과조치) 3학기제로 입학한 학생들의 등록금 수납방법 및 수납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0.05.28.>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0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학부(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 조치) 종전의 학부(과) 명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편, 명칭변경, 통합등의 학부(과) 소속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과)가 폐지된 경우에는 교육과정이 유사한 학부(과)의 소속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0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0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부(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 조치) 종전의 학부(과) 명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편, 명칭변경, 통합등의 학부(과) 소속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과)가 폐지된 경우

에는 교육과정이 유사한 학부(과)의 소속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설치학부(과, 전공) 및 입학정원)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부(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 조치) 종전의 학부(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학부(과) 개편, 명칭변경, 통폐합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년제는 2018학년도 말, 3년제는 201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 명칭변경, 통폐합된 학부(과)의 소속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과)가 폐지된 경우에는 교육과정이 유사한 학부(과)의 소속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0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0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설치학부(과, 전공) 및 입학정원)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부(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 조치) 종전의 학부(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학부(과) 개편, 명칭변경, 통폐합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년제는 2019학년도 말, 3년제는 202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 명칭변경, 통폐합된 학부(과)의 소속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과)가 폐지된 경우에는 교육과정이 유사한 학부(과)의 소속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0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및 제3항의 “강사” 개정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졸업학점 등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으로 인한 졸업학점은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졸업학점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0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설치학부(과, 전공) 및 입학정원)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조(학기)의 개정규정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소급 적용하여 시행한다.

②(학부(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 조치) 종전의 학부(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학부(과) 개편, 명칭변경, 통폐합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년제는 2021학년도 말, 3년제는 202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 명칭변경, 통폐합된 학부(과)의 소속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과)가 폐지된 경우에는 교육과정이 유사한 학부(과)의 소속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04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설치학부(과, 전공) 및 입학정원)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조(학기)의 개정규정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소급 적용하여 시행한다.

②(학부(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 조치) 종전의 학부(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학부(과) 개편, 명칭변경, 통폐합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년제는 2022학년도 말, 3년제는 2023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 명칭변경, 통폐합된 학부(과)의 소속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과)가 폐지된 경우에는 교육과정이 유사한 학부(과)의 소속으로 할 수 있다.

제 호

학 위 증

학 부(과) : (코스, 부전공)
전 공 :
수 업 연 한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학년도 본 대학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전문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대 덕 대 학 교 총 장 ○ ○ ○ (인)

학위번호 : 대덕대 - ○○○○ - ○○○○

[별지 제2호 서식] (과거 학생 신청 용)

제 호

학 위 증

학 부(과) :
전 공 :
수 업 연 한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학년도 본 대학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
전문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대 덕 대 학 교 총 장 ○ ○ ○ (인)

학위번호 : 대덕대 - ○○○○ - ○○○○

제 호

수 료 증

학 부(과) :
전 공 :
수 업 연 한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본 대학 소정의 전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대 덕 대 학 교 총 장 ○ ○ ○ (인)

[별지 제4호 서식] (전공심화 과정)

제 호

학 위 증

학 부(과)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본 대학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 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대 덕 대 학 교 총 장 ○ ○ ○ (인)

학위번호 : 대덕대-○○○○-○○○○

증빙번호:

공학기술교육인증 학위과정 졸업 확인서

성 명
학 번
생 년 월 일
학 과
교육과정명
학 위 명
졸업연도 년 월

위 학생은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한 ○○○○학
위과정 졸업생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덕대학교총장 ○○○



대덕대학교
DAEDUK UNIVERSITY

ABe@K 한국공학교육인증원
Associ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

Issue No:

CERTIFICATE of Graduation

Full Name:

Date of Birth:

Date of Admission:

Date of Graduation:

Department:

Course of Study:

Degree Conferred:

Degree Registered No.: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named person graduated from the Dept. of Electronic Automation Engineering and this education program is accredited by the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ABEEK).

President of Daeduk College



대덕대학교
DAEDUK UNIVERSITY



[별표1] <개정 2013.03.01., 2014.03.01., 2015.02.23., 2017.02.27., 2017.08.28., 2018.04.20., 2019.02.26., 2019.11.19., 2020.07.27., 2021.04.05>

전문학사 학위의 종별

종 별	해당계열 및 학부(과)	비 고
공 전 문 학 사	컴퓨터·정보통신계열, 전기·전자계열, 전기전자계열, 컴퓨터전기전자계열, 산업응용계열, 컴퓨터응용설계계열, 전자계산과, 전자계산기과, 전자과, 전기과, 산업공학과, 사무자동화과, 제어계측과, 산업안전과, 정보통신과, 공업경영과, 전자통신과, 컴퓨터정보통신계열, 인터넷정보기술계열, 멀티미디어계열, 정보통신계열, 타이어공업과, 컴퓨터인터넷정보계열, 컴퓨터응용계열, 시스템안전설계계열, CAD그래픽스과, 컴퓨터게임제작과, 인터넷신문·방송과, 마이크로로봇과, 영상컨텐츠과, 디지털전자정보과, 컴퓨터네트워크과, 총포광학·장비과, 특수탄약과, 유도무기과, 자동차계열, 인터넷방송과, 모바일컨텐츠과, 전자정보과, 웹스타일리스트과, 전자상거래과, 인터넷정보과, 정보보안·해킹과, 총포광학과, 유도탄약과, 유도탄약·화학과, 특수무기과, 국방물자과, 정보미디어과, 정보행정기술과, 기술공무원과, 전자자동화과, 정보미디어과, 통신미디어과, 정밀기계시스템과, 전자CAD과, 정보통신학부, 컴퓨터인터넷응용학부, 컴퓨터정보학부, 자동차학부, 군간부·공무원양성과, 컴퓨터인터넷학부, 로봇과, 컴퓨터로봇과, IPTV서비스과, 컴퓨터·군간부학과, 기계자동차학부 정밀기계시스템전공, 기계자동차학부 CAD그래픽스전공, 기계자동차학부 자동차전공, 기계자동차학부 기계설계전공, 기계자동차학부 정밀기계공학전공, 전기전자정보통신학부 전자자동화전공, 전기전자정보통신학부 전기·정보통신전공, 문화컨텐츠학과, 건설공병학과, 해양기술부사관과, 컴퓨터웹정보과, 정밀기계공학과, 컴퓨터인터넷학과, 기계설계과, 보건의료융합과, 인테리어·건축과, 자동차학과, 항공정보통신학과, 컴퓨터공학과, 컴퓨터전자과, 컴퓨터정보학과, 국방탄약과, 방공·유도무기과, 함정기술과, 해양수중과, 정보통신학과, 방공유도무기과, 함정기관기계과, 전투부사관과, 특전부사관과, 함정기술부사관과, 해양수중부사관과, 전기전자과, 공병부사관과, 항공부사관과, 반도체자동화과, 해양특수부사관과, 방공정보통신부사관과, 국방해양부사관과	보건의료융합과는 2014학년도 졸업 생까지 해당함
경 전 문 학 사	경상정보계열, 경영과, 무역과, 경영정보과, 세무회계과, 노동복지과, 노사조정과, 디지털경상계열, 경영·광고계열, 레스토랑창업·운영과, 서비스경영과, 레스토랑창업	

종 별	해당계열 및 학부(과)	비 고
	· 경영과, 텔레마케팅과, 마케팅관리과, 비즈니스과 경영전공, 비즈니스과 마케팅관리전공, 비즈니스과 세무회계전공, 비즈니스과, 마케팅서비스과, 세무공무원과, 레저산업학과, 마케팅·세무회계과	
행정전문학사	행정정보계열, 행정과, 지역사회개발과, 비서행정과, 경찰·복지계열, 경찰행정과, 복지계열, 경찰·공무원양성계열, 복지학부, 경찰행정학과, 복지학과, 사회복지과, 영유아보육과, 전투부사관과, 특전부사관과, 아동보육상담학과, 군사경찰부사관과	전투부사관과, 특전부사관과는 2014학년도 졸업생까지 해당함
교전문학사	유아교육과	
예전문학사	무용과, 모델과, 연기예술과, 연기연예과, 연기뮤지컬과 엔터테인먼트과, 연극영상과, 예술학부 모델전공, 예술학부 연기뮤지컬·엔터테인먼트전공, 예술체육학부 모델·연기영상과, 영상연기콘텐츠과	
체전문학사	체육계열, 사회체육과, 생활체육과, 예술체육학부 생활체육학과	
산업예술전문학사	산업디자인계열, 디지털디자인계열, 컴퓨터그래픽과, 산업디자인과, 상업디자인과, 공간디자인계열, 인테리어·리모델링과, 코디네이션과, 컴퓨터그래픽디자인과, 시각디자인과, 토탈코디네이션과, 디자인학부, 예술학부 인테리어리모델링전공, 예술학부 뷰티·패션디자인전공, 예술학부 시각·리빙디자인전공, 예술체육학부 디자인과, 예술체육학부 뷰티과, 패션리빙디자인과, 인테리어디자인과, 뷰티과, 패션디자인과, 샵마스터쇼핑과, 웹툰학과	
관광전문학사	관광통역계열, 관광서비스계열, 관광계열 호텔·외식과, 관광과, 항공·철도승무과, 관광·항공철도승무과, 호텔·관광과, 호텔외식과, 호텔관광과, 호텔관광서비스과, 호텔외식조리과, 호텔관광서비스과 호텔외식서비스전공, 호텔관광서비스과 항공여행공항관리전공, 호텔외식서비스과, 항공서비스과, 호텔레저컨벤션과	
보건전문학사	보건의료융합과, 보건의료행정과	
애완동물전문학사	반려동물과	

[별표2] <개정 2013.03.01., 2015.06.10., 2017.02.27., 2018.02.27., 2019.02.26., 2021.04.05>

학사 학위의 종별

종 별	해 당 학 부 (학 과)	비 고
교육학사	유아교육과	
사회복지학사	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아동학사	영유아보육학과, 아동보육상담학과	
경영학사	경영학과	
행정학사	경찰행정학과	
공학사	총포광학과, 정밀기계공학과	

[별표3] <신설 2011.02.25.> <개정 2014.08.29.>

학부(과)별 공학기술교육인증 학위과정 및 학위종별 (국문)

학부(과)	학위과정	학위명칭	비고
총포광학과	총포광학기술	총포광학기술전문학사	
전자자동화과	전자자동화공학	전자자동화공학전문학사	
CAD그래픽스과	기계기술	기계기술전문학사	
기계설계과	기계기술	기계기술전문학사	

학부(과)별 공학기술교육인증 학위과정 및 학위종별 (영문)

학부(과)	학위과정	학위명칭	비고
Department of Firearms & Optics	Firearms & Optical Engineering	AS in Firearms & Optical Engineering Technology	
Department of Electronic Automation Engineering	Electronic Automation Engineering Technology	BS in Electronic Automation Engineering Technology	
Department of CAD & Graphics	Mechanical Engineering Technology	AS in Mechanical Engineering Technology	
Dept. of Mechanical Engineering Design	Mechanical Engineering Technology	AS in Mechanical Engineering Technology	